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1
----------	------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1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764,160원”에서 “3,815,000원”으로 변경함([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나. 예산조치 : 월정수당 인상액 2018년 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15,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 분</th> <th style="padding: 5px;">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월정수당</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right;"><u>3,764,160 원</u></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u>3,764,160 원</u>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 분</th> <th style="padding: 5px;">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월정수당</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right;"><u>3,815,000 원</u></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u>3,815,000 원</u>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u>3,764,160 원</u>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u>3,815,000 원</u>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별표 2〕에 근거한 ‘서울특별시회의의원의 월정수당’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월정수당 일부 조정

- 3,764,160원→3,815,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인당 월 50,840원의 비용 발생

○ 연간 약 6,468만원(50,840원×12월×106명=64,668,48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이 은 영

주 무 관 박 경 순

☎ 02-3705-1277, e-mail(kssunbi@seoul.go.kr)